

음주운전 관련 형량 현황과 과제

— 목 차 —

- I. 음주운전의 실태
- II. 해외 처벌실태
- III.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실태
- IV. 향후 방향 모색
- V.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발표자 윤해성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음주운전의 심각성

- 2017년 기준, 19,517건 중 사망자 439명 / 부상자 33,364명
- 2022년 기준, 15,059건 중 사망자 214명 / 부상자 24,261명

음주운전 (2017년)

사망자 439명	전체 19,517건	부상자 33,364명
-------------	---------------	----------------

음주운전 (2022)

전체 15,059건	사망자 214명
---------------	-------------

→ 한국의 음주운전은 선진국 대비 **교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상황

- 음주운전 사범 처벌을 위해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 권유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차량 몰수 구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방안**(경찰청과 합동 시행)」,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시행함

→ 처벌강화방안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

① 혐의 입증의 난해성 증가



② 교통사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계수치 산출이 어려움

③ 경미 사건에 의한 입원환자 및 미신고 교통사고 건수 증가

④ 교통사고량의 증가에 따른 보험사기범죄 건수 증가



가. 미국

①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할 수 있으며, 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하는 등의 제도를 실시함

애리조나	미네소타	테네시
차량 운행 정지 또는 압수	차량 압수 및 몰수 외 특별한 번호판 표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차량 몰수
델라웨어	뉴멕시코	버진 아일랜드
차량번호판 압수	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에 한해 차량 압수	번호판 취소

- 미국의 경우 최초 1회 위반부터 적용하는 주도 상당히 많음
- 미시간 등은 재범시 몰수, 미네소타, 로스엔젤리스,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은 3회 위반시 차량 몰수함

해외 처벌실태



[주류개봉 금지법]

- 차량 내에서 주류를 개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주류개봉 금지법**을 시행함
- 거의 모든 주가 주류개봉 금지법을 시행함
- 테네시는 오직 운전자에 한하여 주류개봉 금지법을 적용함

- 연방기준에 충족하는 **상습범 처벌** 규정을 각 주마다 갖추고 있음

앨라배마 콜로라도 델라웨어
워싱턴 DC 하와이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시시피
일리노이 몬태나 캔터키 뉴저지 뉴욕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구분

면허정지,
취소기간
달리 정함

경우에 따라,

수강명령, 치료보호, 약물검사를
의무적 또는 판사 재량에 의하여
이수 또는 치료



가. 미국

③ 처벌

- 음주운전 단속 규제기준은 0.08%이지만, 가중처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가중할 수 있음
 -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기간이 30일, 90일, 4개월, 6개월, 12개월 등이며, 텍사스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면 90일, 음주측정 거부 시 180일 등으로 차등적으로 정지 기간을 둠
- 최초 음주 운전 시 구금 이상 처분을 하는 주도 상당함
 - 최소 2일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가중
처벌면허
정지

구금

사회
봉사



가. 미국

③ 처벌

-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했을 경우 A급 중범죄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본질적'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 미만인 '최초' 위반자는 최고 1년의 징역형과 \$350~\$5,000의 벌금형을, 최초 위반으로부터 7년 이내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미만인 사람은 최대 1년, 가택연금 또는 전자 주택 모니터링(금주 프로그램) 기간은 60일이며, 벌금은 \$500~\$5,000임



가. 미국

③ 처벌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에 전자 모니터링 기간 (금주 프로그램)은 최대 90일이며 벌금은 \$750~\$5,000,
7년 이내에 '3회'에서 '4회'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미만인 사람은 구금 90일에서 1년, 금주프로그램을 병행한 전자 주택 모니터링 기간은 120일이며, 벌금은 \$1,000~\$5,000,
'3회에서 4회' 음주운전 위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20일에서 1년의 징역 내지 전자 주택 모니터링 기간은 150일이며, 벌금은 \$1,500~\$5,000임
10년 안에 '5회'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최대 8년의 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짐
- 최초 음주 운전 시 구금 이상 처분을 하는 주도 상당함
 - 최소 2일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가. 미국

④ 면허정지기간 동안 제한적 운전 허가

- 제한적 운전허가란 면허 취소된 사람이 제한적 목적을 위해 운전할 수 있도록 판사가 필수적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재량적으로 운전을 허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필수적인 조건'이란 각 주마다 상이하나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위반자의 고용, 생계의 유지, 교육, 법원의 명령과 치료보호, 보호관찰 조건으로 사회봉사, 응급처치, 종교적 이유를 필수적 조건으로 지정함
- 제한적 운전 허가는 대개 면허정지 후 10일 이후, 15일 이후, 30일 이후이며, 45일 이후, 90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디애나의 경우는 곧바로 제한적 운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메릴랜드는 제한적 운전 허가의 조건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요구. 뉴멕시코의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다면 곧바로 제한적 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주리의 경우 뉴멕시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다면 곧바로 제한적 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면허정지 30일 이후부터 제한적 면허허가를 받을 수 있음



가. 미국

⑤ 시동잠금장치

-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를 6개월간 의무 장착해야 하며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상해사고이거나 재범의 경우는 1년에서 최대 4년 동안 설치를 명할 수 있음
-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유죄판결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해야 하나, 일부 주의 경우는 재량적이며, 0.15%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의무적 장착 또는 상습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강화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정책적인 음주운전 방지 및 재범 방지 정책을 시행함

 나. 영국

① 처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이후 운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가 되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음

-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호흡 100(ml)당 알코올 최소 87.5 micogrammes 이상, 혈액 100ml 당 알코올 200mg이거나 소변 100ml당 알코올 267.5mg인 경우,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에 한하여
 - 영국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서 임명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해당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



나. 영국

② 단속기준과 정책

- 영국 법원은 위반수준이 사회명령에 정당할 정도로 심각하면 사회재활명령이나 사회 내 처우 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음주운전 위반자에게는 야간통행 금지처분 시행함
- 특이한 점은 영국에서는 1991년 고위험위반자(High Risk Offenders; HROs)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 음주의 법적 기준을 2.5배 초과하거나 10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위반자의 경우에는 최소 3년간 운전자격이 박탈됨
 -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이 있는 의사의 결정이 있어야만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음



다. 프랑스

◎ 단속기준과 정책

- 프랑스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이상인 운전자는 의료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면허 재취득 전 1~3년 동안 의무적인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함
-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됨
- 프랑스의 경우는 법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지만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되며, 임시면허 기간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됨



라. 독일

◎ 단속기준과 정책

- 음주운전 행정처분 관련하여 독일은 6개월~5년까지의 면허 박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됨,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심리학적 감정대상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함
- 2017년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혐의가 특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법관의 명령[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각종 교통에서 약물이나 음주를 섭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합리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법관의 영장 없는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이 인정됨. 이로써 운전자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희석 등으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함



마. 일본

◎ 단속기준과 정책

- 2014년 그동안 형법에 규정되었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를 삭제, 특별법상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을 신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대상을 확대, 음주와 약물의 발각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함
- 그 결과, 음주 및 약물 사망사고 시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음주 부상 사고시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 음주 및 약물외 일반적 과실운전치사상죄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규정하였음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실태

처벌규정			구성요건		처벌
형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감경규정			구성요건		처벌
형법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벌하지 아니함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실태

◎ 우리나라 실태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행위는 주관적 구성요건상의 고의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처벌의 수위가 과실범에 준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이 관대해왔던 것이 사실임



- 한편으로는 형사정책상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인가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처벌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아 있음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실태

◎ 우리나라 실태

▪ 우리나라의 경우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법정형이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음주단속의 방식 ③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방식, ④ 증거능력 및 ⑤ 증명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⑥ 필요적 보호관찰이나 ⑦ 재활프로그램으로서의 차량잠금장치 조건부 또는 ⑧ 치료·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 주요 외국의 입법례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가 결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실태

◎ 우리나라 실태

-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외관상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관상 그러할 뿐임
→ 즉 동죄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완전한 명정상태로 해석되고 있음(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때문에 실제 법정형은 주요 외국의 음주운전 치사상죄보다 훨씬 경하다고 할 수 있음. 그동안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음

① 음주운전 원천적 차단

-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발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
 - 그동안 논의되었던 음주운전의 처벌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보더라도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상습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외국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으므로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병행하거나 할증을 강화, 또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원천적 차단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병행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실시

②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 죄질이 경한 경우 자발적 알코올중독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하여 자발적인 치료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중독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투입을 억제해야 함
→ 이때에도 자발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보호관찰의 부과는 법원의 판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이 있으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조건부 치료명령**이나 또는 **강제입원명령의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③ 자동차 몰수

- 음주운전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차량 몰수제도임
 -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사망사고이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음주운전의 재범을 야기한 사람에 한하여 차량을 몰수해야 함
- 상습위반자의 경우, 처벌 등에 입각한 기본적인 방법에 무감각 해져 있는 상태임. 이에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압류하여 차로부터 운전자를 격리시키는 이른바 차량 압류 제도를 시행해 왔음. 상습 음주운전자로서 일정 형이 선고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를 몰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몰수는 부수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형벌인 이상 근거규정이 필요함. 덴마크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자동차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임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

- 우리나라는 실제 선고 형량이 관대하고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는 경향임.
가령,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보통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선고되고 이 가운데 77%가 집행유예이며,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집행유예가 약 95% 차지함
→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함
-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음.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권이 없고 민사상 해결에 의존함
- 음주운전의 원천적 차단은 물론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처벌규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함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는 관행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임. 왜냐하면 그동안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음주운전치사상죄의 적용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적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그동안의 관행에 의하여 업무상 중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할 우려가 다분함

-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사망사고나 중대사고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먼저 적용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 그동안 관행대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성요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음
- 그런데 실무상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사망사고거나 중상해 정도의 사고일 경우에 한하여 경찰이 입건을 하는 경향임. 그만큼 음주운전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관계상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임.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닌 이상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하는 경향임.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일본과 같이 특별법을 마련하여야 함.** 가령 가칭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고려해야 함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

전 용 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7.18.



목 차

I. 우리나라 음주운전 추세 분석

II. 음주운전 국제 비교

III. 주요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관련 제도

IV. 결론

[첨부] 미국 뉴욕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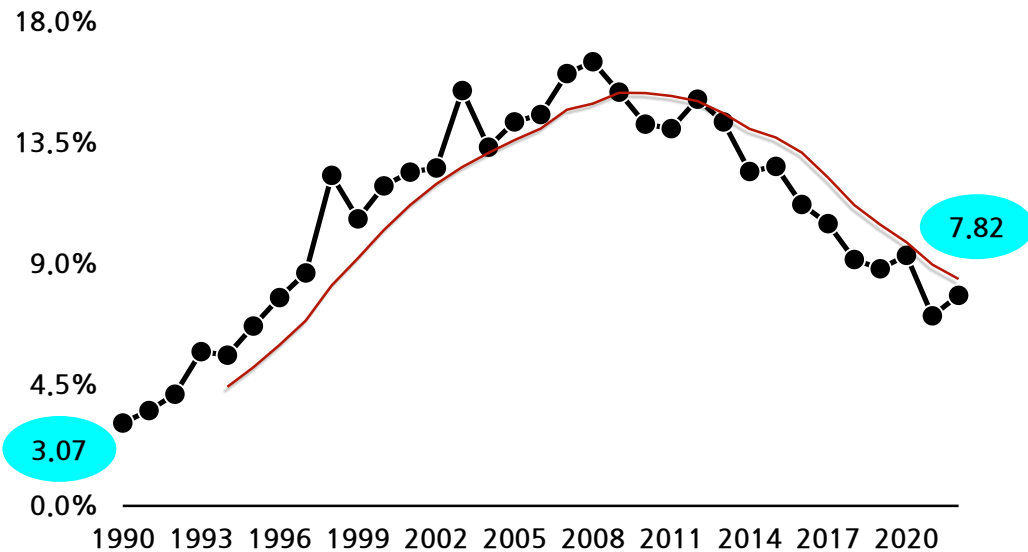
I

우리나라 음주운전 추세 분석

1. 음주사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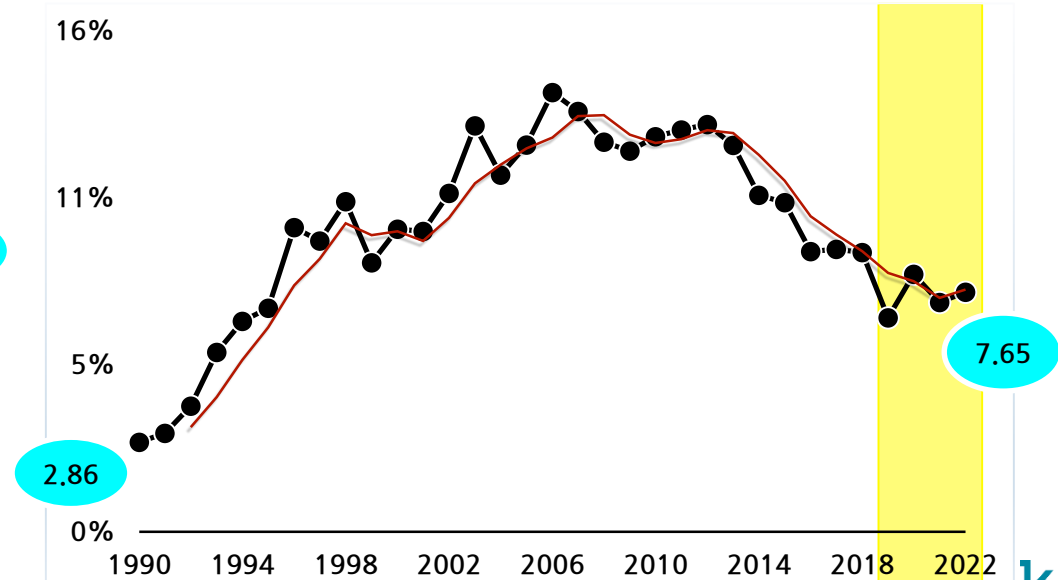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지표는 2007년 전후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2020년 전후로 다소 높아짐
 -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비중은 장기추세(3년 이동평균) 수준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임
- 1990년의 3.07%, 2.86%에 비해 2022년의 음주운전 건수, 사망자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더 악화된 상황임
 - 음주운전 억제 방안에 대한 지속적 모색이 필요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1986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40여년 전인 1982년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92%,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은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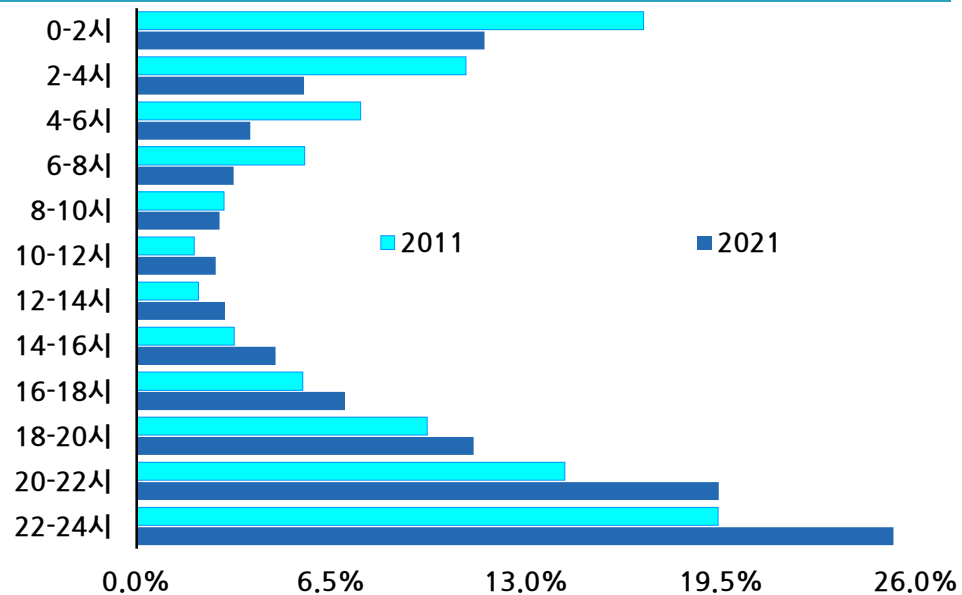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음주운전 사고



2. 음주사고 발생 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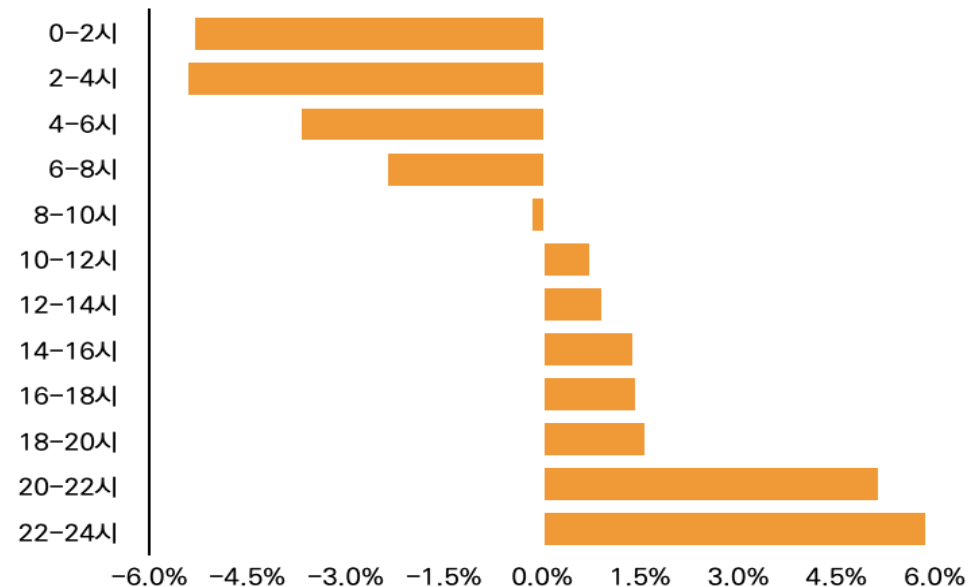
- 시간대별 음주사고 분포는 과거 10년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밤 8시 이후 음주사고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났고 새벽 시간대 사고발생 빈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해보면 오전 10시 이후 음주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는 반대로 오전 12시 새벽 시간대 음주사고 발생빈도는 줄어들었음

음주사고 발생 시간별 분포



자료: 도로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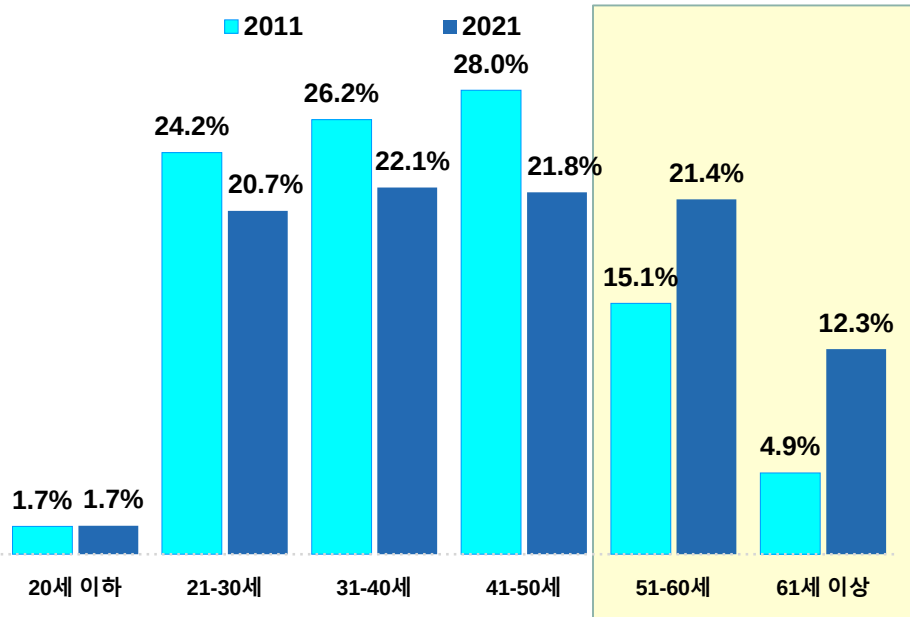
2021년과 2011년 시간별 음주사고 비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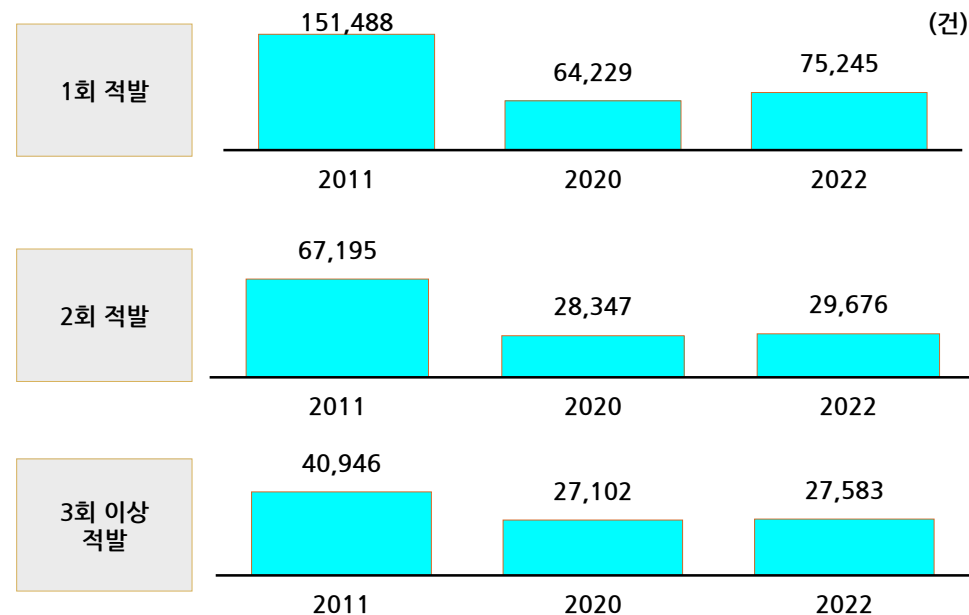
3. 음주운전 연령의 변화와 반복적발

-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음주사고 운전자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임
 - 61세 이상 운전자의 음주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2.3%로 2011년 4.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짐
 - 51세~60세 운전자의 음주사고 비율은 15.1%에서 21.4%로 높아짐
- 1회 적발 건수는 2019년부터, 2~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음주사고 발생 운전자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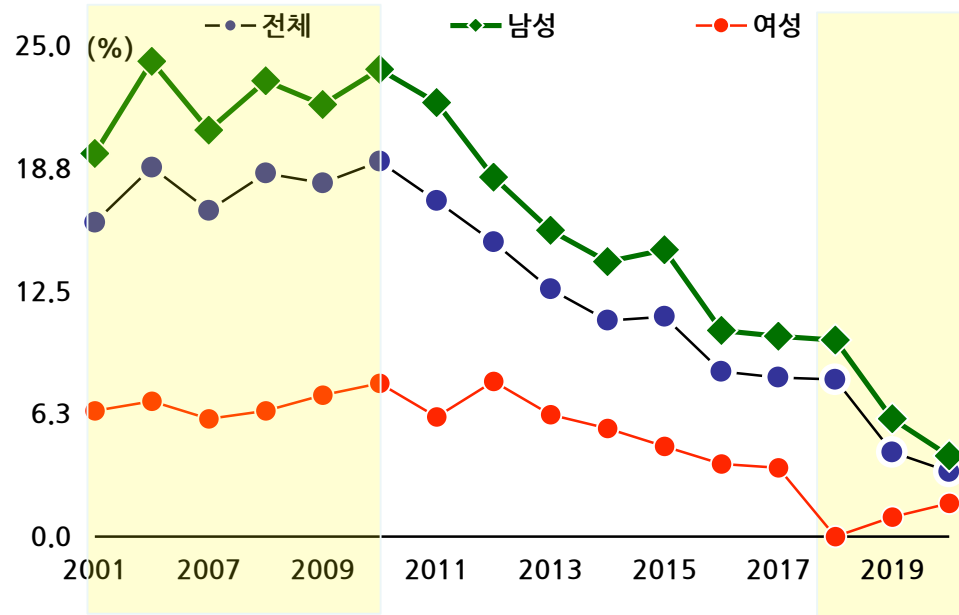
음주운전 적발 횟수 추이



4. 음주사고 발생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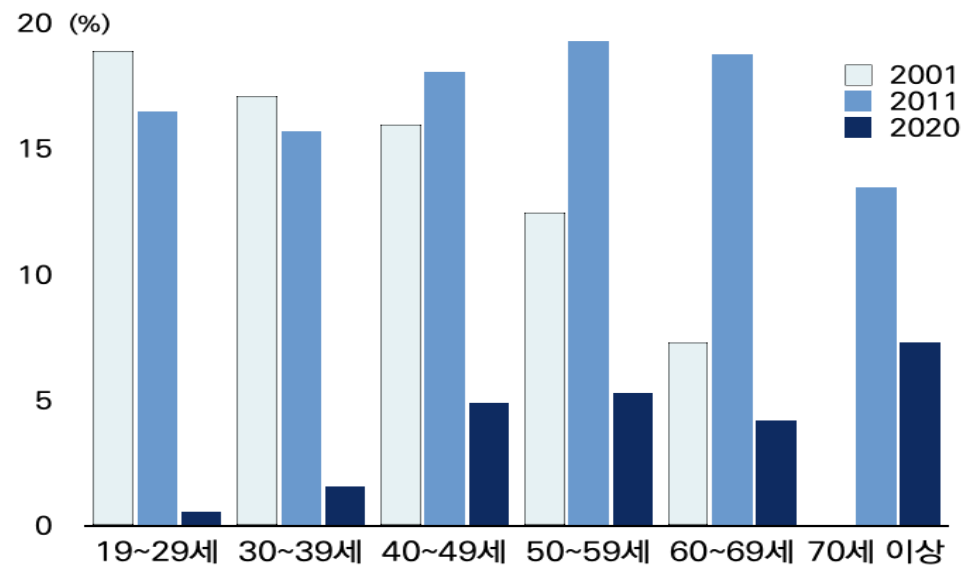
- 음주운전 경험률은 음주사고 건수, 음주사고 사망자 수 등의 추세와 유사하게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2001년 16%에서 2010년 19.1%로 높아졌지만 2015년 11.2%, 2018년에는 8.0%, 2020년 3.3%로 감소함
- 세대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01년에는 20대가 가장 높았지만 2020년에는 가장 낮아졌고 2020년에는 40대 이상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자료: 도로교통공사

연령별 음주운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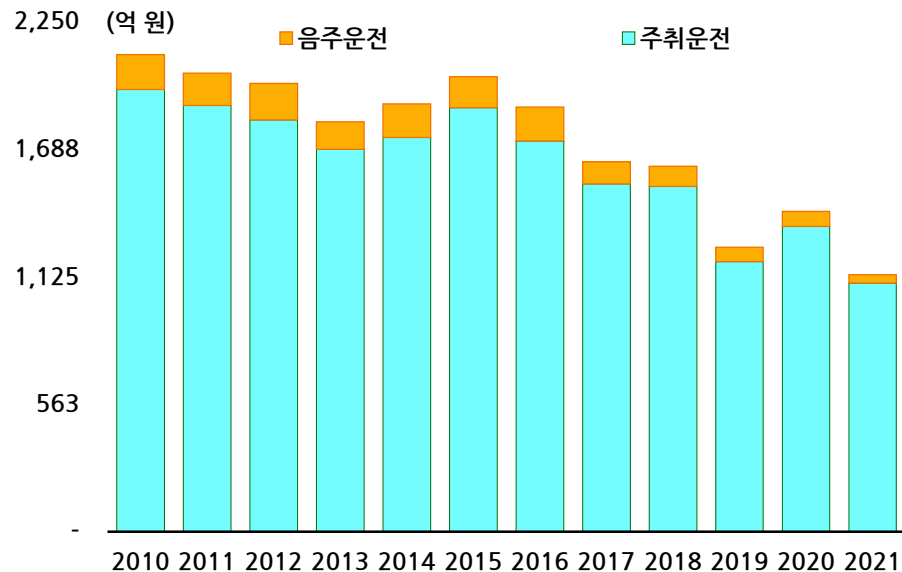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진흥공단

5. 음주사고 보험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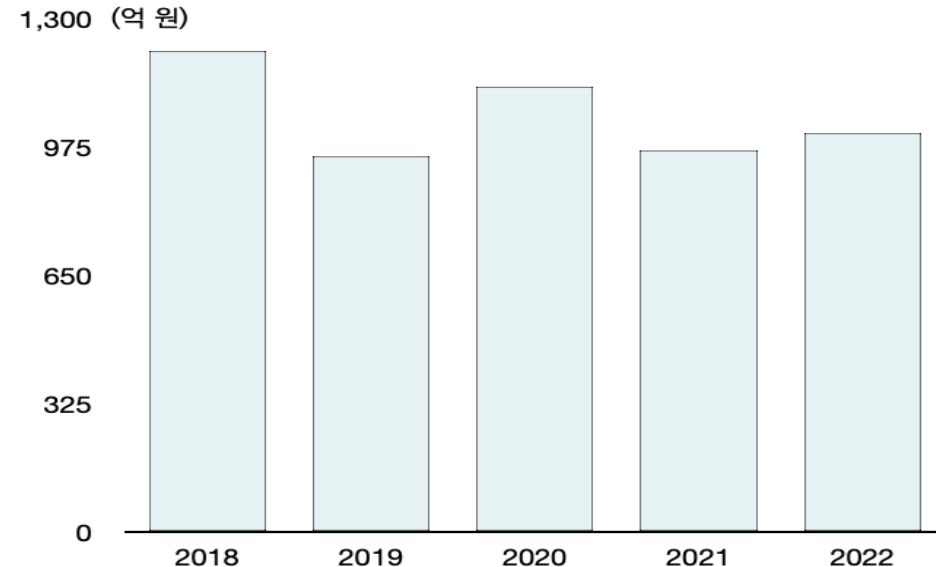
- 주취,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은 2021년 1천억 원 내외, 대물배상 보험금 규모(사고 부담금 기준)도 2022년 1천억 원 내외임
-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한 보험금 규모는 2021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20.3조 원의 1% 내외 수준임
 - 피보험자가 음주사고 가해자인 경우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주요국과 다르게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함

음주운전으로 지급한 신체상해 보험금 규모



주: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 인신상해 보험금의 합계임
자료: 보험개발원

음주사고로 인한 대물보험금 규모



주: 12개 보험회사 대물 사고부담금 기준임
자료: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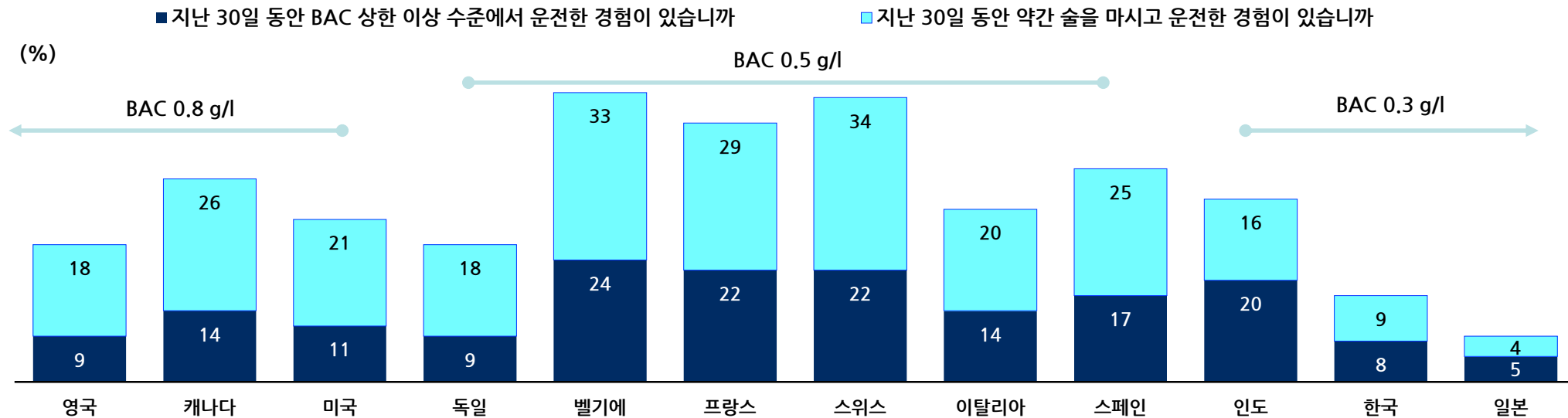


음주운전 국제 비교

1. 음주사고 발생 위험도

- 주요국의 음주사고 발생 위험도 조사 결과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음주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이 9%, 우리나라 17%, 독일 27%로 낮게 나타났고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국가별 음주사고 위험도 비교



Goldenbeld et al, "Impaired Driving due to alcohol and drugs: Int'l difference and determinants based on E-Survey of Road Users' attitude first-wave results in 32 countries", IATSS Research 44, 2020, 188-196

2. 음주운전 사회적 비용

-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음주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0.57명으로 독일, 영국, 일본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음주사고의 사회적 비용도 높은 것으로 보임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운데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이 영국보다 높지만 영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임

2019년 기준 주요국 음주운전 사회적 비용

구 분	우리나라	독일	영국	일본
자동차 등록대수(백만 대)	23.2	56.5	31.5	81.8
교통사고 사망자(B)	3,349	3,046	1,748	3,215
음주사고 사망자 수(A)	295	228	210	159
음주사고 사망자/교통사고 사망자	8.8%	7.5%	12.0%	4.9%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GDP 대비)	2.3%	0.7%	1.5%	1.4%
인구 십만명 당 음주사고 사망자 수	0.57	0.27	0.32	0.13
인구 십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6.5	3.7	2.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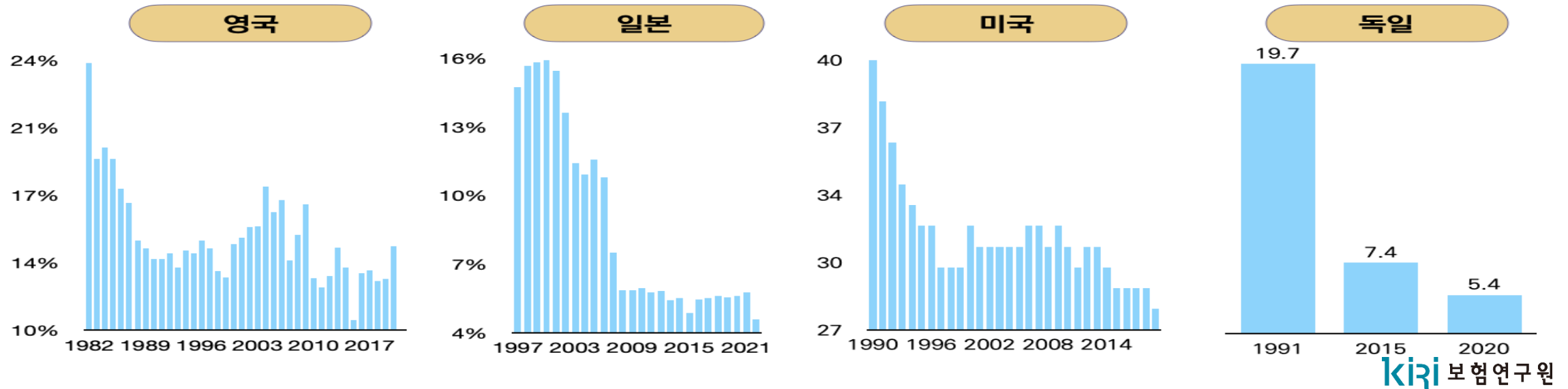
주: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2019년 기준, 독일 2020년 기준, 영국 2019년, 일본 2010년 기준임
 자료: 전용식·윤성훈·김연희(2021),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영국은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독일은 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를 참조함

3. 과거 40여년 동안 주요국의 음주운전 추세

- 지난 40년 동안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음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1982년 3.63%에서 2020년 7.8%로 높아짐
- 영국은 1982년 24%에서 2020년 14%로, 미국은 1990년 40%에서 2019년 28%로, 독일은 1991년 20% 내외에서 2020년 5.4%로 감소함

주요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



Ⅲ

주요국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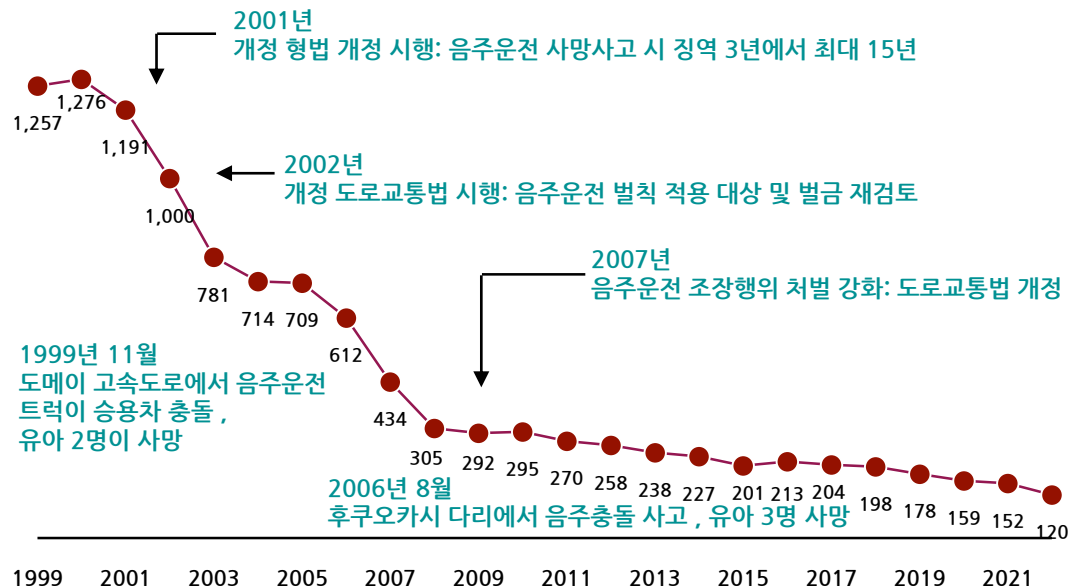
1. 일본

- 2001년 형법 개정, 2002년 BAC 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였고, 높아진 처벌 수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함
- 호흡측정 시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처벌이 벌금, 징역, 면허정지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주류 제공자, 동승자도 처벌 받음
- **피보험자가 음주사고 가해자일 경우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등은 보상하지 않음**
 -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인, 대물배상은 보상하지만 자기신체사고, 탑승자상해보험 등은 보상하지 않음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호흡기 중 알코올 농도 0.15~0.25mg	호흡기 중 알코올 농도 0.25mg 이상	음주운전
운전자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운전자 벌점	13	25	35
운전자 면허정지	90	면허취소/면허결격 기간 2년	면허취소/ 면허 결격기간 3년
동승자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일본의 제도개선과 음주운전 사망자 수 추이



2. 영국

- BAC, 운전여부, 피해자 사망 여부 등에 따른 형량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대인, 대물담보 이외의 자기신체사고(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동차보험료는 5년 동안 할증되고 음주 적발 운전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개인용 보험료의 두 배 이상임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에 대한 징계

위반 사항	• BAC 이상 차량 승차: 3개월 이상 징역, 2,500 파운드 벌금, 운전금지(Driving-Ban) • BAC 이상 운전: 6개월 징역, 벌금 무제한, 1년 이상 운전금지 • BAC 이상 운전, 사망 사고: 종신형, 5년 운전금지
보험 보상 제한	• 제3자 배상책임보험 이외의 담보 보상 제한 •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경우 보상제한(25% 보상)
인수제한	• 과거 2년동안 있었던 음주운전 경력을 가입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https://www.gov.uk/drink-driving-penalties>

자동차보험료 할증률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Driving-Ban)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5년간 500% 인상
- 영국의 평균 보험료 640파운드에 비해 2.5배 내외 높음

주요 음주운전 유형과 유형별 평균 보험료

DR10: Driving or Attempting to Drive with Alcohol Level above Limit	1,406 파운드
DR40: In Charge of a vehicle while alcohol level above limit	1,356 파운드
DR30: Driving or attempting to drive then failing to supply a specimen for analysis	1,576 파운드

<https://www.confused.com/car-insurance/drink-driver>

3. 독일

- 벌금, 벌점,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조치외에도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엄격한 면허 재발급 규정 등이 적용됨
 - 독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고 초래 시 보험료는 두 배 이상 할증됨
- 21세 미만의 청소년과 수습 기간 2년의 초보운전자는 BAC 0.0%의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적용
 -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AC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적발 시 벌금은 250 유로, 벌점 1점, 교육 이수

법규 측면

형법

- 면허 정지: Section69: ...Disqualified from Driving by the Court if the act shows that drivers are unfit to drive a motor vehicle

구분	벌금(유로)	벌점	면허정지
0.03%~0.05%	행정처분 대상		
0.05% 이상			
1 회 적발	500	2	1 개월
2 회 적발	1000	2	3 개월
3 회 적발	1500	2	3 개월
0.16% 이상	법원 결정	법원 결정	최대 5년 / 징역

보험 측면

담보

- 피보험자가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주취 운전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 규정이 있음
 - 음주사고 운전자의 차량보험(자차), 자동차상해 보험 면책
 - 배상책임보험 최대 5,000유로까지 보험자 면책

보험요율 및 면허 발급

- 상습 음주 운전이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 없음
- 면허 취소 판결 시, 0.5~5년 동안 면허 발급 금지
- 0.16% 이상으로 징역형 이후 법원이 명령한 의료심리검사 완료 여부 확인
- 의료심리검사는 건강검진, 심리 테스트, 대면심리 상담으로 구성

4. 미국_음주유인 억제

- 1984년 법정음주연령 제정, 1990년대 각 주의 BAC 강화 등 법률적 측면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락,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음주운전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유타 주는 BAC 기준을 0.08%에서 0.05%로 강화하였는데, 조치 이후 사고 건수, 부상자 수, 음주운전자 수 등이 모두 감소함

법정 음주연령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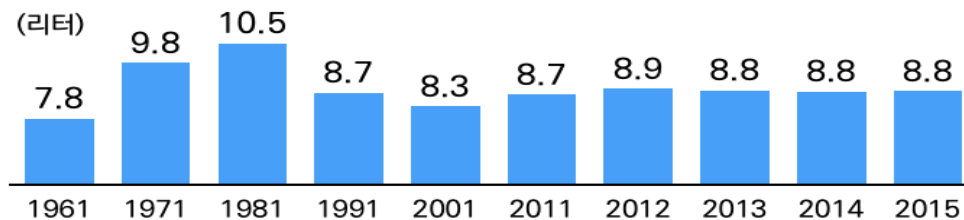
제정

- 1984년 법정음주연령법(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Act) 시행으로 주류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21세로 제정, 1988년까지 모든 주가 채택함

효과

- NHTSA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8년까지 18,220명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추정됨
 - Minimum Drinking Age Law Fact Sheet(1998)

미국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BAC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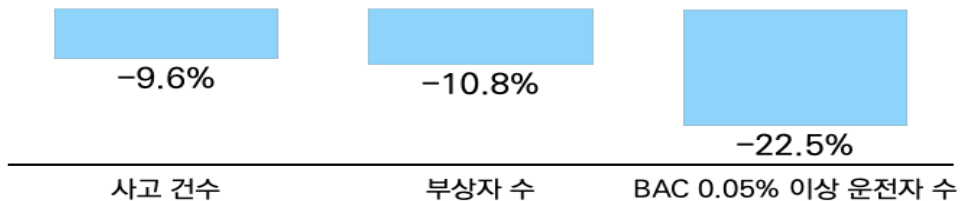
1994

- 6개 주가 BAC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 음주 운전 사망자 수 비중이 6%p 하락한 것으로 분석
 - Hingson, Ralph., Timoty Heeren, Michael Winter(2001), "Effect of Recent 0.08% legal blood alcohol limits on Fatal Crash Involvement", Injury Prevention 2000, 6:109-114

2018

- 유타주 2018년 12월 0.08%에서 0.05%로 하향
- 2016년 음주사고 사망자 281명에서 2019년 248명으로, 음주사망 사고 259명에서 225건으로 감소

유타주 제도개선 이후 12개월 평균 음주사고 관련 지표



주: 주행거리 1억 마일 당
자료: Traffic Tech, US Dept. of Transportation, 2022

5. 미국_보상측면

- 뉴욕주의 경우 영국, 독일과 유사하게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면책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을 경우 갱신거절, 혹은 계약 취소가 가능함
-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는데 평균적으로 캘리포니아는 131%, 뉴욕주는 8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보험 보상 측면

뉴욕

-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치료 면책(5130조 (b)(2), 우리나라의 자기신체사고 면책)
- 음주운전 경험이 있을 경우 갱신거절 혹은 계약취소 가능

캘리포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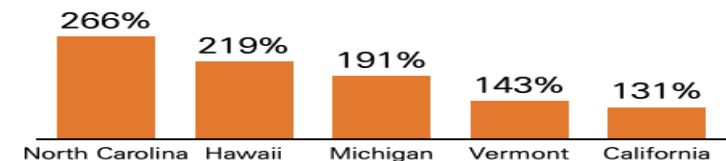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체 상해 소송(Personal Injury Lawsuit),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함(보험회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보상하지 않음)
-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경험이 있을 경우 갱신거절 혹은 계약취소를 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료 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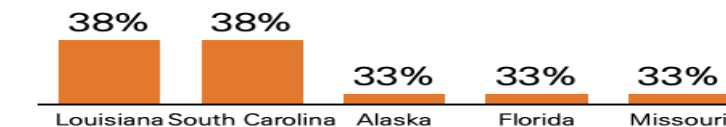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만기일의 4개월 앞서는 마지막 날부터 이전 3년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뉴욕주 보험법 제2335조 과도한 할증 금지 조항에 적용 제외

음주운전에 대한 미국의 평균 보험료 할증률

상위 5개



하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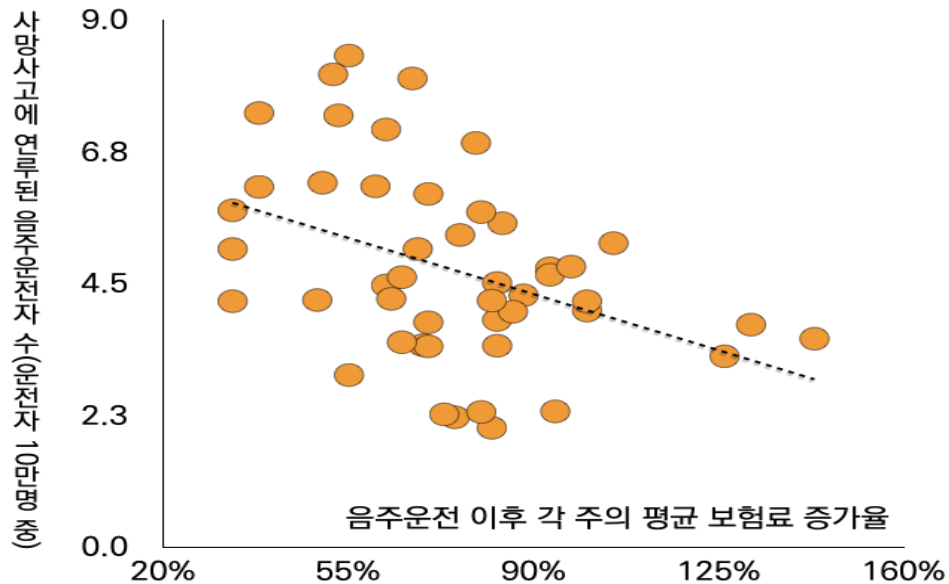


Source: Quadrant Information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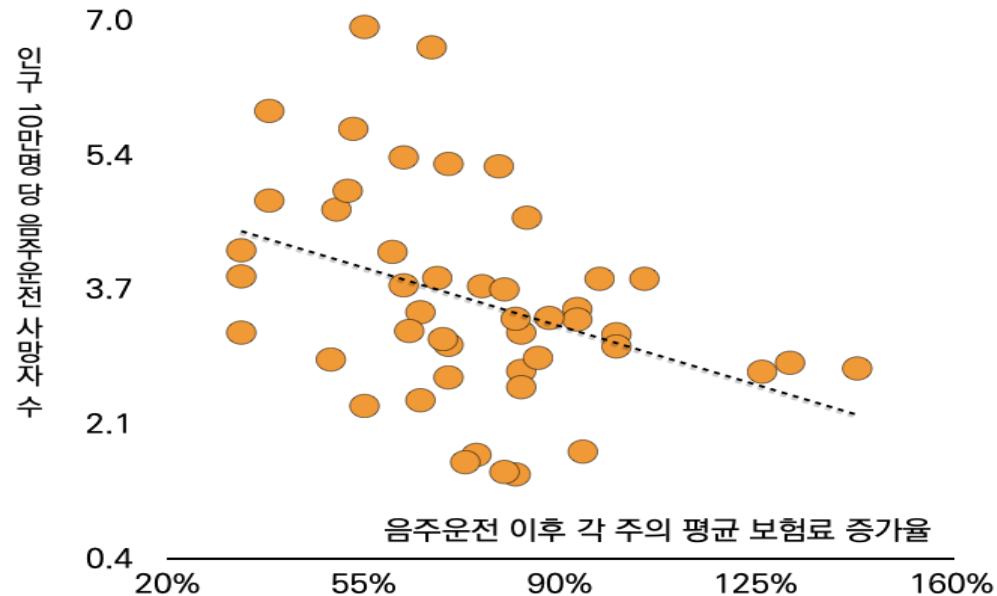
6. 미국_보험료 할증과 음주사고

-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증률과 사망사고 관련 음주 운전자 수, 그리고 보험료 할증률과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사이에는 음의 선형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노스캐롤라이나 등 할증률이 큰 주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보험료 할증률과 사망사고 관련 음주 운전자



보험료 할증률과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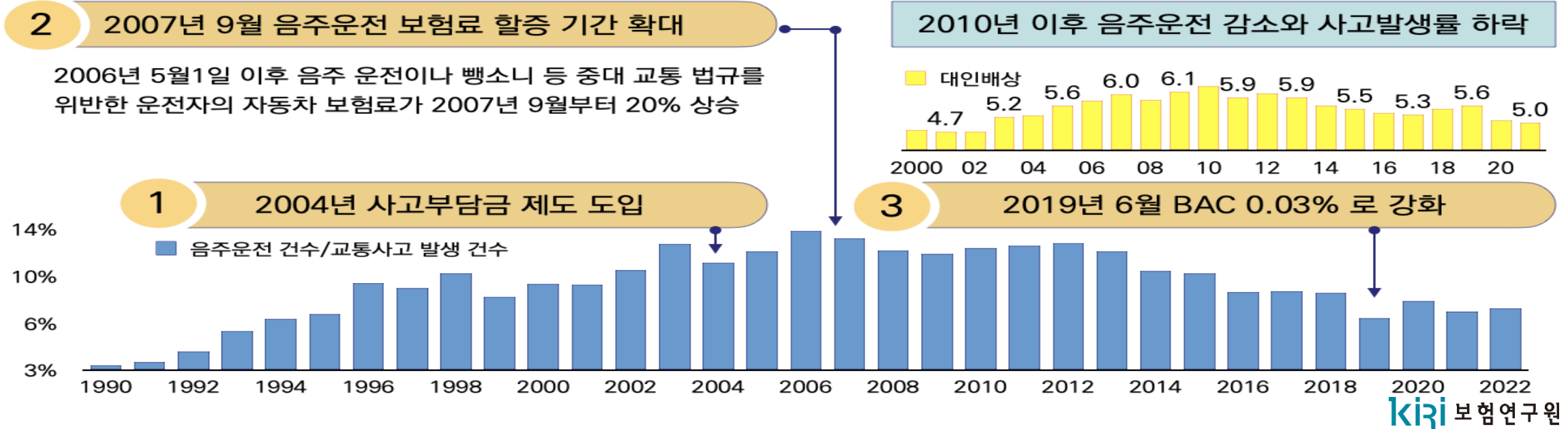
IV

결론

1.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음주운전 건수 비율은 2006년까지 상승하였는데, 2007년 9월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반영 기간 확대와 할증률 인상 이후 13.4%에서 2009년 12.2%로 소폭 감소함
- 같은 기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은 16.1%에서 15.4%로 하락함
- 2019년 BAC 강화 이후 음주운전 건수는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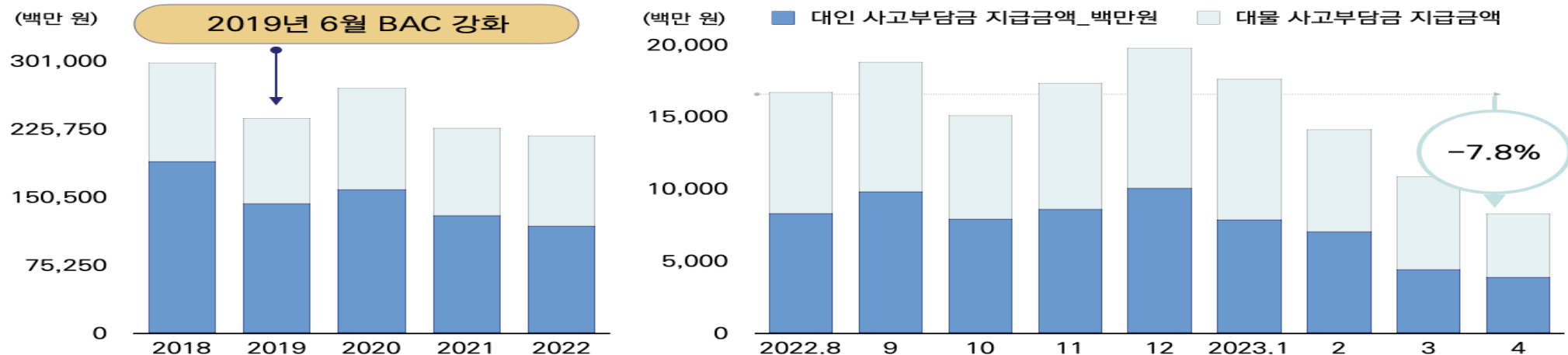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음주운전 건수 비중 변화 요인



2. 사고부담금 제도개선 효과

- 사고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무면허 음주사고 가해자에게 사고 1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인데, 2022년 7월 28일 이후 사고부담금이 높아지고 2023년 4월까지 평균 7.8% 감소함
 - 대인 1명당 3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대물 1건당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 2019년 6월 BAC 강화와 처벌 강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2020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증가함
 - BAC는 0.05%에서 0.03%, 징역은 3년에서 5년, 벌금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됨

사고부담금 지급 규모 추이



자료: 국회의원 최승재(국민의 힘) 의원실

3.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종합적, 효과적인 대책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인수거절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음주운전 억제라는 목적달성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임(대인배상 면책, 사고부담금 사례)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형사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에 더해 보험료 할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 더불어 일본과 같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필요하고, 알코올락(Alcohol Lock) 도입 등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대부분의 교통범죄 양형 감경 요소에 종합보험 가입이 포함됨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보상제한	• 사고부담금 제도 • 자기차량손해 면책 • 자기신체상해(차상해) 보상 • 동승자 보험금 감액 (40% 감액)	• 뉴욕주 보험법(제5103조 (b)(2)): 음주운전 운전자의 상해 치료비 면책 • 캘리포니아주: 징벌적 손해 배상청구 가능	• 제3자 배상책임보험 이외의 담보 보상 제한 • 동승자 보상 제한(25%)	•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량 보험, 자동차상해 면책 • 배상책임보험 최대 5천 유로 면책	• 자기신체사고 면책
보험료 할증	•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이상 할증	• 뉴욕주보험법(제2335조): 자동차보험 만기일 4개월 이전부터 이전 3년간 음주운전 한 경우 과도한 할증 허용 • NC: 266% 할증	• 음주운전 적발 이후 2.5 배 이상 높아짐(평균 보험료 640 파운드)	•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없으면 할증 없음 • 음주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최대 할증률 260%	• 벌점 상승폭 만큼 할증
인수	• 임의, 의무보험 인수 거절이 가능하지만 공동 인수를 통해 구제	• 인수거절 및 계약취소 가능	• 인수거절 및 계약취소 가능	• 면허 재취득 단계에서 의료심리학 감정서 요구	

4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한 언론보도

【7】 第19742號 1985年11月22日 本曜日

海外취업 크게 줄어

80년 2萬여명서 올해엔 4千여명에 그칠 듯
전문인력은 外國서 요청해와도 못내 보내

해외개발공사 12월부터 「人力정보실」 운영

【서울 22일路透電】 80년대 해외취업 인원이 2萬여명에서 올해엔 4千여명에 그칠 듯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개발공사에 따르면, 80년대 해외취업 인원은 2萬여명에서 올해엔 4千여명에 그칠 듯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개발공사에 따르면, 80년대 해외취업 인원은 2萬여명에서 올해엔 4千여명에 그칠 듯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民正연수원 농성학생 3등

주모 46척구 50여단순
2명이 불지르고 35명

【서울 22일路透電】 민정연수원 농성학생 3등 주모 46척구 50여단순 2명이 불지르고 35명

車량증가율 보다 웃돌아

保險 보상 제의 처벌 규정 강화 등 보완책 시급

【서울 22일路透電】 차량증가율이 보험 보상 제의 처벌 규정 강화 등 보완책 시급

韓國人선원 24명 안륙

서울 7개대서

【서울 22일路透電】 한국인 선원 24명 안륙 서울 7개대서

【1986年3月24日創刊】 1986年5月14日（水曜日） 1版 【日刊】

음주·무면허운전 보합處理 안된다

被害보상놓고 당사자간紛爭

보험회사 免責規定 月末 실시

【서울 14일路透電】 음주·무면허운전 보합處理 안된다. 피해보상놓고 당사자간紛爭. 보험회사 免責規定 月末 실시.

보험회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보합處理 안된다. 피해보상놓고 당사자간紛爭. 보험회사 免責規定 月末 실시.

보험회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보합處理 안된다. 피해보상놓고 당사자간紛爭. 보험회사 免責規定 月末 실시.

감사합니다.

[참고] 미국 뉴욕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BAC 기준	초범	재범
0.05~0.07% 이하	- 300~500달러 벌금(추가 벌금 255달러) 또는 15일 이하 징역(혹은 모두) - 90일간 면허정지 처분	- 5년 이내인 경우, 500~750달러 벌금(추가 벌금 255달러) 또는 30일 이하 징역(혹은 모두) - 6개월 이상 면허 취소 - 교육프로그램(Victim Impact Panel) 참석 - 10년 이내 3번 이상 위반일 경우 750~1,500달러 벌금(395달러 추가 벌금), 180일 이하 징역(혹은 모두) - 최소 6개월 이상 면허 취소/교육프로그램 참석/ 2~3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0.08% 이상	- 500~1,000달러 벌금(추가 벌금 395달러) 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모두) - [2급 음주운전 치사죄]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달러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두 차례: 1,000~5,000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혹은 모두) - 1년 이상 면허취소/3년 보호관찰/보호관찰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 6개월 이상 면허 취소/3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 10년 이내 세 차례: 2,000~10,000달러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모두) - 1년 이상 면허 취소/3년 보호관찰/교육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 [1급 음주운전 치사죄] 15년 이하 징역, 5,000달러 이하의 벌금
0.15% 이상	- 1,000~2,500달러 벌금 또는 최대 1년 징역(혹은 모두) - 1년 이상 면허 취소/3년 보호관찰/보호관찰 기간 중 시동잠금장치/교육프로그램 이수	- 10년 이내 두 차례 위반일 경우: 1,000~5,000달러 벌금 혹은 1년 징역(혹은 모두)/ 1.5년 면허취소/3년 보호관찰/보호관찰 기간 중 시동잠금장치/교육프로그램 이수 - 10년 이내 세 차례, 2,000~10,000달러 벌금 혹은 최대 7년 징역(혹은 모두)/ 1.5년 이상 면허 취소